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및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하여 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방위사업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2호 중 “방위사업기술”을 “국방과학기술”로 한다.

제12조 중 “기동·화력·전투함·특수함·항공기·헬기”를 “기동·화력·함정·항공기·헬기”로,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를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 전력운영사업(각 군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동일) 등 국내 분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 중 “기반전력사업본부 내”를 “전력운영사업,”으로,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을 “공통품목(전력운영사업 조달품목 중 사업팀도 조달 필요 품목. 이하 동일)의 국내 분야”로 한다.

제15조 중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를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 전력운영사업 등 국제 분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7호 중 “미래전력사업본부 내”를 “전력운영사업,”으로,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을 “공통품목의 국제 분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후단 중 “23명”을 “24명”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49명”을 “48명”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402”를 “399”로, 일반직 계 “401”을 “398”로, 3급 또는 4급 이하 “392”를 “38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25”를 각각 “718”로, 3급 또는 4급 이하 “658”을 “651”로 한다.

별표 3 1. 한국형전투기사업단(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형전투기사업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별표 3 2. 한국형잠수함사업단(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형잠수함사업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등)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공포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기간 구분 정원 구분	이 영 공포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정원	3명	2명	1명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생략)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방위사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분석·평가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u>	12. <u>국방과학기술</u> ----- -----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u>기동·화력·전투함·특수함·항공기·헬기</u>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u>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제12조(직무) ----- <u>기동·화력·함정·항공기·헬기</u> ----- ---- <u>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 전력운영사업(각 군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동일) 등 국내 분야</u> ---.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 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u>	7. <u>전력운영사업,</u> ----- ----- <u>공통품목(전력운</u>

<u>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집행 및 계약관리</u>	<u>영사업 조달품목 중 사업팀도 조달 필요 품목. 이하 동일)의 국내 분야</u> ----- -----
8. ~ 16. (생략)	8. ~ 16. (현행과 같음)
제15조(직무)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우주·지휘·통제·통신·유도 무기·감시·전자·무인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u>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u> 계약에 관한 사무,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직무) ----- ----- ----- ----- <u>관리 및 계약</u>에 관한 사무, <u>전력운영사업 등 국제 분야</u> ----- -----.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① (생략)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 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집행 및 계약관리</u>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전력운영사업,</u> ----- ----- <u>공통품목의 국제 분야</u> ----- -----
8. ~ 16. (생략)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8. ~ 16. (현행과 같음)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② -----

-----.

----- 24명을-----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48
명을-----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 ----- ----- --.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u>2024년 12월 31일</u>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둔다.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 ----- ----- ----- <u>2026년 12월 31일</u>-----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u>2024년 12월 31일</u>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둔다.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 ----- ----- ----- <u>2026년 12월 31일</u>-----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표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방위사업청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02</u>		<u>399</u>		-3
	.		.		.		
	.		.		.		
일반직	계		<u>401</u>		<u>398</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92</u>		<u>389</u>		-3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725</u>	<u>718</u>	-7
일반직 계	<u>725</u>	<u>718</u>	-7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58</u>	<u>651</u>	-7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3